

의안번호	2209364
의 퇴 인	최보운의원
회 답 일	2025.5.14.
추계번호	25D1913
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3(인공지능의 활용) 제3항 신설	행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보안 관리조치 및 해당 인공지능 활용이 공정성 및 국민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인공지능영향평가 조치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2조(의견청취)	행정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·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의3(인공지능의 활용) 제3항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조(의견청취)	

2. 상세 사유

-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 실시(안 제5조의3)
 - 개정안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경우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 활용이 공정성 및 국민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인공지능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연구비, 용역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 행정청¹⁾과 행정작용은 그 주체·대상이 광범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보안 관리조치와 인공지능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청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어렵고, 그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·공청회 실시(안 제22조)

-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·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문회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 행정청은 그 주체·대상이 광범위하고, 행정절차 상 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문회 및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처분을 명확히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1) 현행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행정청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가.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
나.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(이하 "법령등"이라 한다)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(私人)
2. "처분"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(行政作用)을 말한다.
3. "행정지도"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, 권고,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.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